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49

발의연월일: 2022. 8. 2.

발 의 자:류성걸·강기윤·강대식

金炳旭・김용판・박정하

이주환 · 정운천 · 조명희

조은희 • 주호영 • 홍석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으로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함.

그런데 외국환매도율의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수수료와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모두 포함하는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에비하여 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환매도율을 보다 저렴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국환매도율"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환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	제18조(과세환율)
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	
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	
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	
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의 <u>외국환매도율</u> 을 평균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u>환율 또는 재정환율</u>